고양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41호

2026년도 제1회

공무직 우정실무원 채용 공고

고양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소통관련 보조업무를 담당할 우정실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고양우편집중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단위: 명)

채용직종	근무형태* (근무시간)	채용 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공무직 시간제 우정실무원	석근 시간제(4h) (18:00~22:00)	4	- 고중량 소포, 특수통상 우편물 분류, 구분 공급, 이동, 파렛트 적재 및 체결 - 고중량 파렛트 운반, 발송 · 도착 - 운송용기 정리 등 기타 부대업무	상당한 체력을 요함

* 모집 근무형태와 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1. 신 분: 비공무원 신분의 공무직 근로자(우정실무원)

※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 계약시작일에는 채용 전 안전보건교육(16h)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전원 13시~22시 교육 시행

2. 채용예정일: 2026.12.1.(화) 예정(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보 수

o 기본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 기타수당

o 기타수당 : 주휴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 한), 급식비 등

- 연장근로, 휴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o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4. 근무일수(주 5일): 월~금 근무

5. 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6. 휴　　가: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휴가 등

3.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1. 응시연령 : 최종 시험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2. 응시자격 제한

o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o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채용결격사유 >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우정실무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1. 1차 서류전형

o **적극적 서류심사**

계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법정)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경력	지원분야 자격증	
100점 + 가점	60	30	10	3, 5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예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2. 2차 면접전형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

o 제1차 서류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3. 응시서류 접수

o 공고기간 : 2026.11.17.(화) ~ 2026.11.24.(화) 17:00까지 (공고일 제외 7일)

o 접수기간 : 2026.11.17.(화) ~ 2026.11.24.(화) 17:00까지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8:00까지(11:30~13:00접수 불가)

※ **접수기간 이전 또는 이후 접수분은 지원 불인정**

4. 접수장소 : 고양우편집중국 3층 물류총괄과 (☎ 031-920-5222)

5. 접수방법 : e-mail,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o **모든 접수분은 2026.11.24.(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 함**

o e-mail: tax40007810@korea.kr

o 등기우편접수주소: 우)10449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6. 고양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 비공무원 채용 담당 앞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표시)

※ **e-mail로 응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PDF ·JPG 파일로 제출**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11.25.(수)
(개별통보 및 고양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공고)

o 면접시험일시: 2026.11.26.(목) 오후 예정

o 최종합격자 발표: 2026.11.27.(금) 합격자 한 개별 통보

※ 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포기,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로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o 응시원서 1부

o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o 공정채용확인서
o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o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서류 1부(해당자 한)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됨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o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전까지 고양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o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인원 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o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o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에 초과되거나 같거나 적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합니다.(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o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o 최종합격 후, 사용자의 요청과 합격자의 동의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야간근로자는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비용 사업주 부담)을 수검 해야하며 특수검진결과 야간근로 부적합 판정 시 야간근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합격자(선발인원의 3배수 내) 중에서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

시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o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양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o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양우편집중국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tax4000781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o 고양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o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031-920-5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표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